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3
----------	------

발의연월일 : 2016. 11. 11.
발의자 : 신창현 · 강병원 · 권미혁
김상희 · 김영주 · 김영춘
서형수 · 소병훈 · 오제세
위성곤 · 윤후덕 · 이상민
이용득 · 이재정 · 전해철
진영 · 최운열 · 표창원
한정애 · 홍영표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예약을 통해 탐방객의 수를 제한하는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이해 및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탐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립공원에 탐방안내제 및 국립공원 탐방예약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이용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한편, 국립공원에 운영 중인 대피소 시설은 탐방객의 긴급 대피나

그 밖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피소의 경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물품 등을 판매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피소에 구호물품을 구비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탐방 안전과 관련 없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국립공원 탐방안내 등) ①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하거나 활용하여 탐방객에게 국립공원에 관한 이해 및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 등을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탐방객의 탐방 예약을 받아 탐방객의 수를 제한하여 국립공원을 탐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3(국립공원 대피소의 운영) ① 공단은 탐방객의 긴급 대피나 그 밖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립공원 내에 대피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피소”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대피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호물품을 갖추고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대피소에서 탐방 안전과 관계없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4228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를 “공단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28조의2(국립공원 탐방안내 등)</p> <p>①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하거나 활용하여 탐방객에게 국립공원에 관한 이해 및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 등을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p> <p>② 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탐방객의 탐방 예약을 받아 탐방객의 수를 제한하여 국립공원을 탐방하게 할 수 있다.</p>
<u><신 설></u>	<p>제28조의3(국립공원 대피소의 운영)</p> <p>① 공단은 탐방객의 긴급 대피나 그 밖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립공원 내에 대피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피소”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공단은 대피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호물품을 갖추</p>

